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달비 가맹금 제외 등 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 등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0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배달비 및 가맹금 산정 관련 규정 신설	4
2. 필수품목 정의 신설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8
3.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상한 규정	14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삭제	19
5.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24
6.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29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

하지 않아도 제제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제6조의6 신설).
-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 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 6제1항 신설).
- 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2항 삭제).
- 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1. 배달비 및 가맹금 산정 관련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u>가맹본부</u>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6. ----- ----- ----- -----배달비 등 가맹본부-----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6(<u>가맹금 산정</u>) <u>가맹본부</u> 가 <u>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제2조제6</u>

현행	개정안
	<u>호 단서에 따른 대가를 제외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2조제6호는 ‘가맹금’을 지급형태에 상관없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에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가맹금 및 가맹금 제외 유형 >

구분	가맹금 및 가맹금 제외 유형
가맹금 유형	<현행법 제2조제6호> -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에 대한 대가 - 상품대금에 관한 채무액,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 -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등 - 계약의 의해 허락받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에 대한 대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시행령 제3조제2항>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
가맹금 범위에서 제외	<현행법> - 가맹본부가 취득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시행령) -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 <시행령 제3조제1항> 1) 신용카드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할인금 등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등의 적정한 도매가격

-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이윤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무료 배달 정책 등을 통해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배달비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배달비를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대가의 예시로 규정해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6조의6).

개정안은 이를 통하여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가맹금 산정 시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1) 「“버거킹이 아니라 갑질킹”...가맹점주에게 할인행사비·배달비 떠넘긴 버거킹의 충격적 실태」(인사이트, 2023.3.20.)

□ 다만, 현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고, 같은 조문 단서 규정 및 시행령에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과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달비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배달비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비’의 경우 현행법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대가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예시로 법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맹금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비용 중 배달비만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가맹금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²⁾이 있어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필수품목의 적정한 도매가격, 각종 수수료·할인금 등과 같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를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 모두 파악하는데 한계 발생

2. 필수품목 정의 신설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개정안은 필수품목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u>상품 또는 용역</u> 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u><신설></u>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상품</u> <u>· 용역, 설비, 그 밖의 물품</u> <u>등</u> ----- ----- ----- 3. ~ 6.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u> <u>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u>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u> <u>“필수물품”이라 한다)을 특정</u>

현행	개정안
	<u>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단순히 혼합한 물품 또는 소량 포장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u> <u>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u> <u>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을 특정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물품</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일 것</u> ③ -----<u>각 호에 따른</u>----- -----<u>기준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물품의 구체적</u> <u>인 기준과 범위</u>-----.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는 무관하거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가맹본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³⁾ 이로 인한 분쟁 발생 및 물가인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정감사(2023.10.16.)에서는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해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등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조정(구속조건부 거래⁴⁾)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임.

3) 「가맹점 10곳 중 6곳 “본사에서 필요없는 물품까지 사게 해” (조선비즈, 2022.12.4.) 등

4)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이에 개정안은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현행법 제12조제1항제2호⁵⁾ 및 시행령 [별표2] 2. 나.⁶⁾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필수품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품목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현행법 시행령의 필수품목 요건 비교 >

개정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 다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단순히 혼합한 물품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개정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소량 포장한 물품 제외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나.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다.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을 특정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물품일 것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2024. 12. 5. 시행 예정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필수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거래조건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2023. 12. 8.)⁷⁾되었다는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12호, 2024.7.3.시행)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1. (생략)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

점, 시행령 개정(2024. 6. 4.)을 통하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원·부재료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물’의 경우 필수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혼합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맹본부의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⁸⁾, 혼합물을 일률적으로 필수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생략)

8) 예컨대 외식업의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소스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원재료들을 혼합·첨가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많음.

3.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상한 규정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신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 ----- ----- ----- -----분담 에-----

현행	개정안
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u>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분담~~----- ----- -----. ③ ----- <u>비용을 부담하는</u>----- ----- ----- ----- -----. ④ 제2항----- -----~~제3항~~----- ----- -----.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현행	개정안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 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한 자	7. 제12조의6제3항----- ----- -----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⁹⁾

○ 이와 같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 강요를 방지하고, 해당 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근 도입(2022. 7. 5. 시행)되었음.

9)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분담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⁰⁾¹¹⁾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의 상한(50%)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임.

○ 다만,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광고·판촉행사가 진행되는데, 개별 행사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이 당사자들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사자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안을 획일적으로 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상한을 두는 것은

10) 「할인 부담에 쿠폰 수수료까지..‘속 터지는’ 가맹점주」(MBC, 2023.10.16.)

「국감 지적에도 여전한 할리스...경찰 할인도 가맹점 부담 ‘100%」(헤럴드경제, 2023.10.17.) 등

11) 참고로,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23.12.27.)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공동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비율은 각각 58.6%와 58.4%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실시 비율에 대해 각각 97.1%와 96.1%로 응답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보임.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며, '22.7월 법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삭제

-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생 략) ② <u>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u> ③·④ (생 략)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

로 통지하면 그 가맹계약은 종료되고,¹²⁾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2007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전후 제13조 조문 비교 >

개정 전 (법률 제6704호, 2002. 5. 13., 제정)	개정 후(현행법)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제13조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①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2) 헌법재판소도 구 법률 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맹계약은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1. 6. 30. 2009헌마582,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가맹점사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채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개정 전 (법률 제6704호, 2002. 5. 13., 제정)	개정 후(현행법)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법률 제6704호, 2002. 5. 13., 제정)	개정 후(현행법)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음.¹³⁾

□ 이에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10년 동안만 인정되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간 제한 없이 인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맹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입

13)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 가맹본부가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 가맹본부가 매장점검을 통해 발견한 계약 위반사항을 기초로 계약종료에 나아간 일련의 행위는 전제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제공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을 수 있는 피해를 줄임으로써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계약갱신요구의 거부가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¹⁴⁾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시에도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논쟁이 있었고,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초기 자본이 투자되는 여러 영역 중 가맹거래에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에서,¹⁵⁾

존속 기간의 삭제는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내에 행사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나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5.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 <u>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u> <u>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본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 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4조의2 내용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현행법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신고 및 공인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정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단체 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¹⁶⁾

16) 현재 공정위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1개의 영업표지별 가맹점주 협의회의 연합단체일 뿐, 협의회의 각 회원사별 상세 현황이나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등록제라는 공적절차를 통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 제고로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자단체의 현황을 공정위 등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본부에 우선협상대상 단체 선정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등록을 막고,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의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등록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허위등록·사정변경으로 인한 요건 미충족·자진 해산 등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시·도지사도 가맹사업자단체 등록기관으로 정하는데, 이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의 수월성·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에 관하여도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참고¹⁷⁾할 필요도 있음.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경우 단체의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단체 구성 및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자율 등록제로 규정(임의규정)함이 바람직하며, 현재 지자체에는 단체 등록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 등록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6.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u>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 ② <u>특정</u>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u>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 <삭제></u> ② <u>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특정</u>----- ----- ----- ----- ----- ----- ----- ----- -----

현행	개정안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u>성실하게</u>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다. ④ (생략)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 ③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3조(시정조치) ① ----- ----- ----- ----- <u>제12조</u>-----

현행	개정안
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의6 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3항·제6항-----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	제35조(과징금) ① ----- ----- ----- -----제1 2조----- ----- -----제12조의6제1항 · 제2항-----제1 4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 3항·제6항----- -----

현행	개정안
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2¹⁸⁾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⁹⁾

‘2023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²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주요 협의내용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①신메뉴·신제품 출시 및 상품 리뉴얼(26.1%), ②가맹점 운영정책 협의(20.8%), ③광고·판촉행사 등 협의(20.2%), ④영업정책 공유(18.5%) 등임.

이러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임에도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안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 및 과징금)를 부과하려는 것임.

19)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개별 가맹점주 중 54.3%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약 53.1%(전체 29.0%)의 가맹점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협의 요청 불응 사유를 주로 무응답, 회원명부 요구, 다른 가맹점단체와의 교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20)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등록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만으로도 가맹점주단체의 협상력이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어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법적 제재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올해 12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²¹⁾가 시행될 예정인바,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자발적인 협의 문화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1)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 5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문 의 처
02)6788-5114